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2. 2.(월)

대체조제 사후통보·확인 업무절차 간소화

-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** 2월 2일(월)부터 **“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”**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(이하 “지원 시스템”)은 **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*을 입력**하면 **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**(이하 “처방 의사”)**가 해당 내역을 확인**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.

*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

※ 시스템 접속 방법(요양기관 인증서 필요) : 요양기관 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 → ‘대체조제 정보시스템’ 아이콘 클릭 또는 ‘대체조제 정보시스템(https://ndsd.hira.or.kr)’ 직접 접속

현재 **「약사법」 제27조제2항**은 **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** 처방받은 의약품과 **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**에 대해서는 **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**와 **환자 고지**를 조건으로 **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**하고 있다. 다만 **사후통보 방식이 전화,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** 있어 **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**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따라 **「약사법 시행규칙」 개정**(‘25.5.2., 시행 ‘26.2.2.)을 통해 기존의 전화, 팩스 방식 외에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**하였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**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**고, **향후**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**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**할 계획이다.

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"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**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,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**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 라고 밝혔다.

<붙임>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준혁 (044-202-24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수 (044-202-249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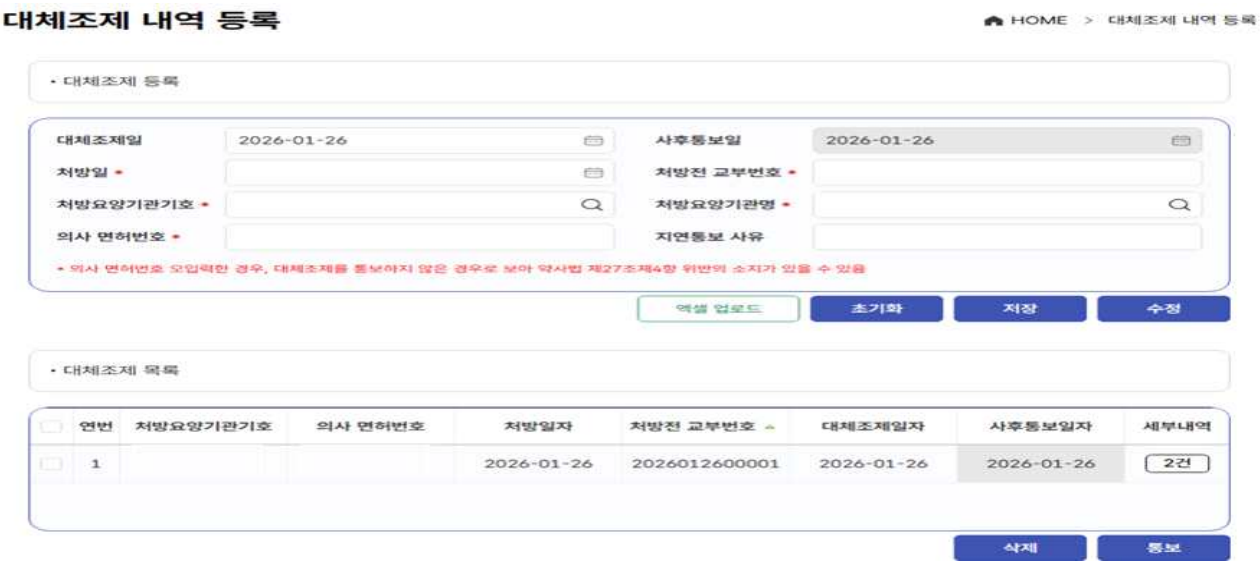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| **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**

① 요양기관 포털 내 배너 화면



② 약사 입력 화면



③ 의사 조회 화면

